

2. 「B교사」의 사례

(B교사 인적사항)

4년제 사범대 출신자로서 '08. 3. 1자로 임용,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후 '12. 7. 1자로 14호봉 승급 (잔여 4월), 2013. 2. 10자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음

가. 감봉 3월의 징계처분 된 경우의 호봉발령

- 1) 차기 승급발령 : 2014. 6. 1. 15호봉을 급함 (잔여 0월)
 - 처분 집행 만료일 : 2013. 5. 10.
 - 승급제한 만료일 : 2014. 5. 10
 - 승급제한 만료일 후 최초 정기승급일 : 2014. 6. 1.
 - 정기승급 잔여
 - 2013. 2. 9. ~ 2012. 7. 1. = 0년 7월 9일
 - 2014. 5. 31. ~ 2014. 5. 11. = 0년 0월 21일
- 0년 8월 0일 + (기준) 잔여 4월 = (1년 0월 0일)

나. 감봉 3월의 징계처분 말소 후 호봉재획정

- 1) 징계처분 말소 기산일 : 2018. 5. 10.
- 2) 호봉재획정 기준일 : 2018. 6. 1. (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 제2항)
- 3) 총 경력년수 계산
 - 2018. 5. 31 ~ 2008. 3. 1. - 감봉처분기간 3월 = 10년
 - 가산연수 : +1 (사범대 졸업)
 - 잔여년수 : 10년 + 1년 = 11년
- 4) 호봉획정 발령 : 2018. 6. 1자 20호봉을 급함 (잔여월 0월) (차기승급일 2019. 6. 1.)